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017. 06



예 천 군

1.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일원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고속국도 예천 I.C, 국도 28호선 및 지방도 928호선과 인접한 양호한 광역교통여건을 가지고 있어 물류·유통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며, 점증하는 공장 수요증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개별공장의 난립을 방지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농업부문에 존재하는 유희노동력 또는 잠재실업을 비농업 부문에 흡수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효율적 자원배분과 이로 인한 국민생산의 증대, 나아가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고용흡수효과 및 단위노동 부담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1.2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 위치 :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 68번지 일원
- 규모 : **195,304m²**(산업시설용지 141,350m²)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업시행자(개발방식) : 예천군수(공영개발)
- 승인기관 : 예천군
- 총사업비 : 약 187억 원

1.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특화농공단지의 부지면적은 195,304m²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모두 해당되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에 해당된다.

<표 1.3-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실시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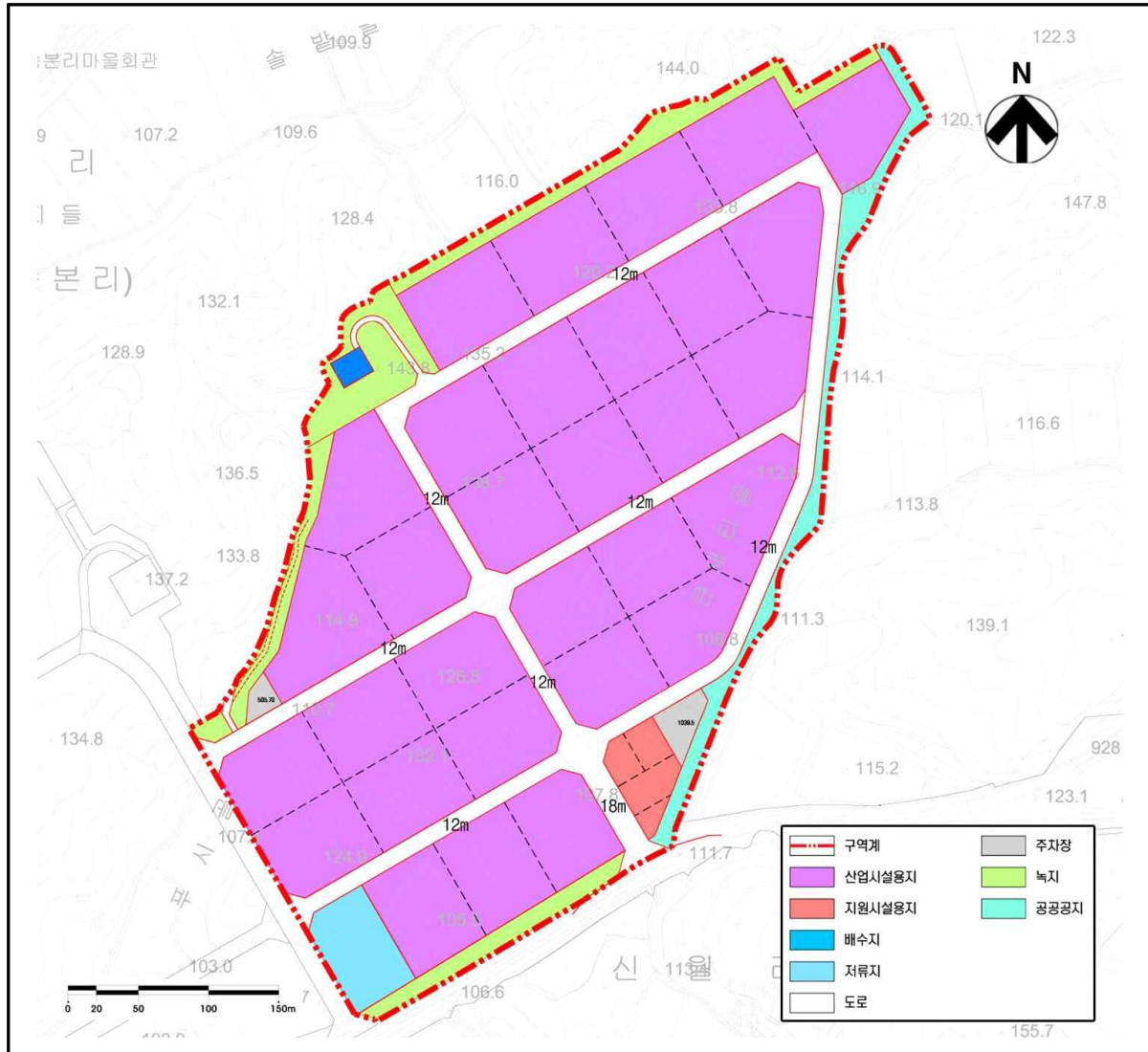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법」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 미터 이상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2.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1.4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14년 7월 : 대상지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 2015년 1월 : 신규조성 농공단지 입지 등의 타당성 심사자료 제출(농림축산식품부)
- 2015년 3월 : 신규조성 농공단지 입지 등의 타당성 심사(농림축산식품부)
- 2015년 10월 :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 조건부승인(행정자치부)
- 2016년 3월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6년 12월 20일 :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 2017년 1월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2017년 5월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예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예정
- 2017년 6월 : 환경영향평가 협의 예정
- 2017년 8월 :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예정
- 2017년 10월 : 농공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정
- 2017년 11월 :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 예정
- 2018년 1월 : 토지보상 및 공사 발주 예정
- 2018년 6월 : 공사 착공 예정
- 2020년 : 공사 준공 및 분양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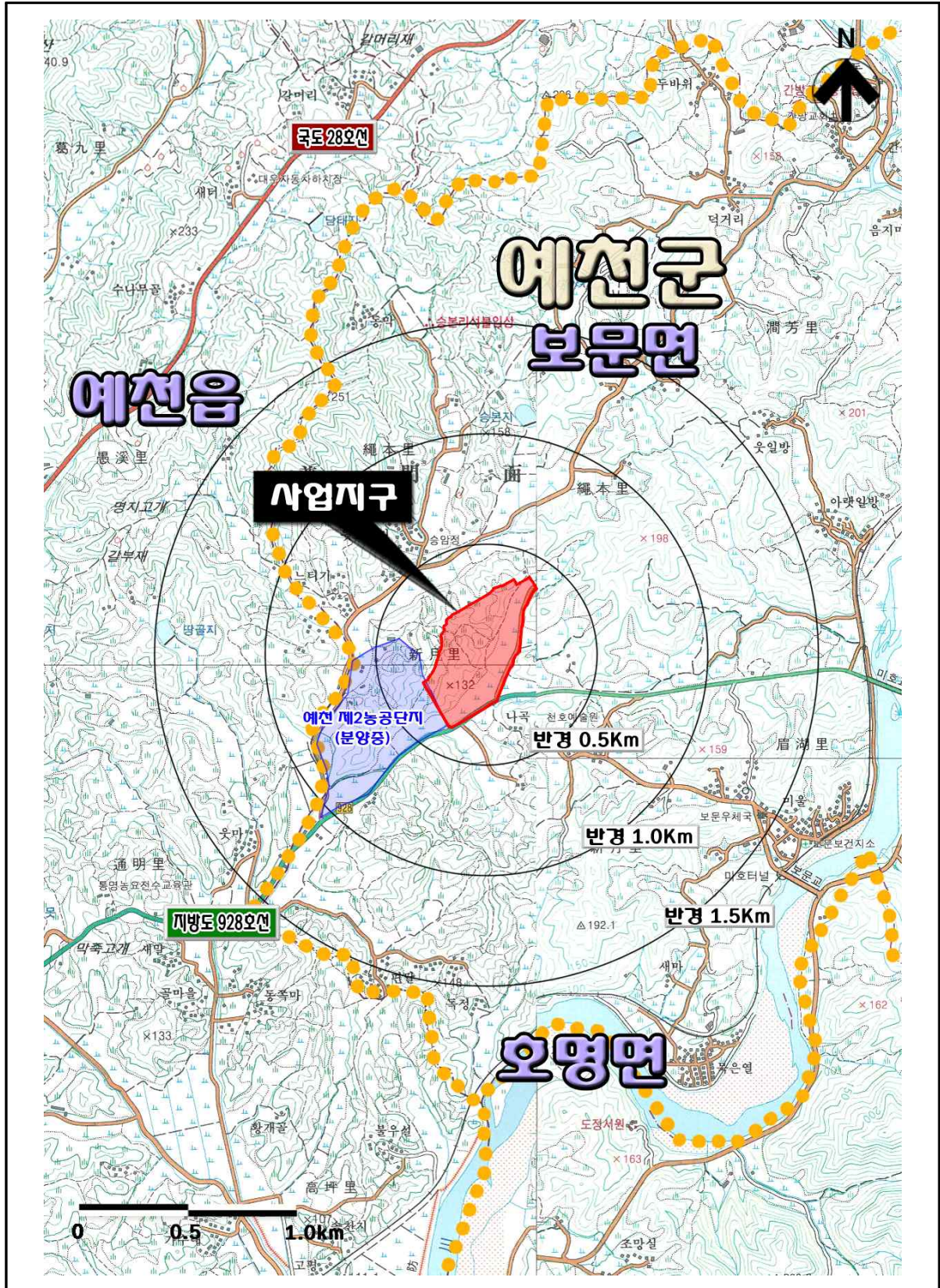
<표 14-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합 계	195,304	100.0	
산업시설용지	141,350	72.4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지원시설용지	2,738	1.4	
공원·녹지	14,724	7.5	
공원	-	-	
녹지	14,724	7.5	
공공시설용지	36,492	18.7	
도로	25,058	12.8	
주차장	1,545	0.8	
공공녹지	5,539	2.8	
배수지	487	0.2	
저류지	3,863	2.0	



<그림 14- 1> 토지이용계획도

1.5 위치도



<그림 1.5- 1> 사업지구 위치도

2.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 환경상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다.
- ▣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구 주변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 운영시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표 2- 1> 평가대상지역 설정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나. 대안의 종류 설정 및 비교·검토

1) 대안의 종류 설정

- ▣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No Action과 Action(2가지 이상)을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시 대안별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의 안을 선정·제시할 것이다.

<표 2- 2>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 안 종 류	대 안 선 정 방 법	비 고
계획의 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을 대안으로 선정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수 단 · 방 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수 요 · 공 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시 기 · 순 서	▣ 개발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연차별 개발)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다. 평가항목의 선정

- ▣ 주요검토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131호」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검토항목을 중점검토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밖에 사업의 특성상 영향이 경미하거나 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항목을 현황조사항목 및 제외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표 2- 3> 평가항목별 선정사유 및 제외항목 설정

분 야	평 가 항 목	선 정 결 과	선 정 사 유
자 연 생 태 환 경	동 · 식 물 상	중점평가항목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및 자연생태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자 연 환 경 자 산	일반평가항목	•사업지역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대 기 환 경	기 상	일반평가항목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 기 질	중점평가항목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장비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운영시 장비가동 및 교통량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
	악 취	중점평가항목	•사업장 운영시 악취물질 발생
	온 실 가 스	중점평가항목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수 환 경	수 수 리 · 수 문 질	중점평가항목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공사인부 투입에 따른 오수 발생 •운영시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 비점오염원 발생
	해 양 환 경	제 외 항 목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
토 지 환 경	토 지 이 용	일반평가항목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
	토 양	중점평가항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토양오염도 현황 파악 •공사시 투입장비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 •운영시 토양오염유발 시설물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
	지 형 · 지 질	중점평가항목	•부지조성으로 인한 지형변화 및 사면 발생

<계 속>

분 야	평 가 항 목	선 정 결 과	선 정 사 유
생 활 환 경	친 환 경 적 자 원 순 환	일반평가항목	•공사로 인한 폐유 및 생활폐기물 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등 발생
	소 음 · 진 동	중점평가항목	•공사시 작업장비 가동으로 인한 영향 •운영시 도로교통 소음, 사업장 소음발생
	위 락 · 경 관	중점평가항목	•지형변화,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경관변화
	위 생 · 공 중 보 건	일반평가항목	•환경기초시설 등 입지에 따른 위생 및 공중보건상에 미치는 영향
	전 파 장 해	제 외 항 목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
	일 조 장 해	일반평가항목	•지형변화,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인접 농경지 일조영향
사 회 경제환경	인 구 · 주 거 · 산 업	일반평가항목	•공사시 및 운영시 인구, 주거, 산업구조 변화

라.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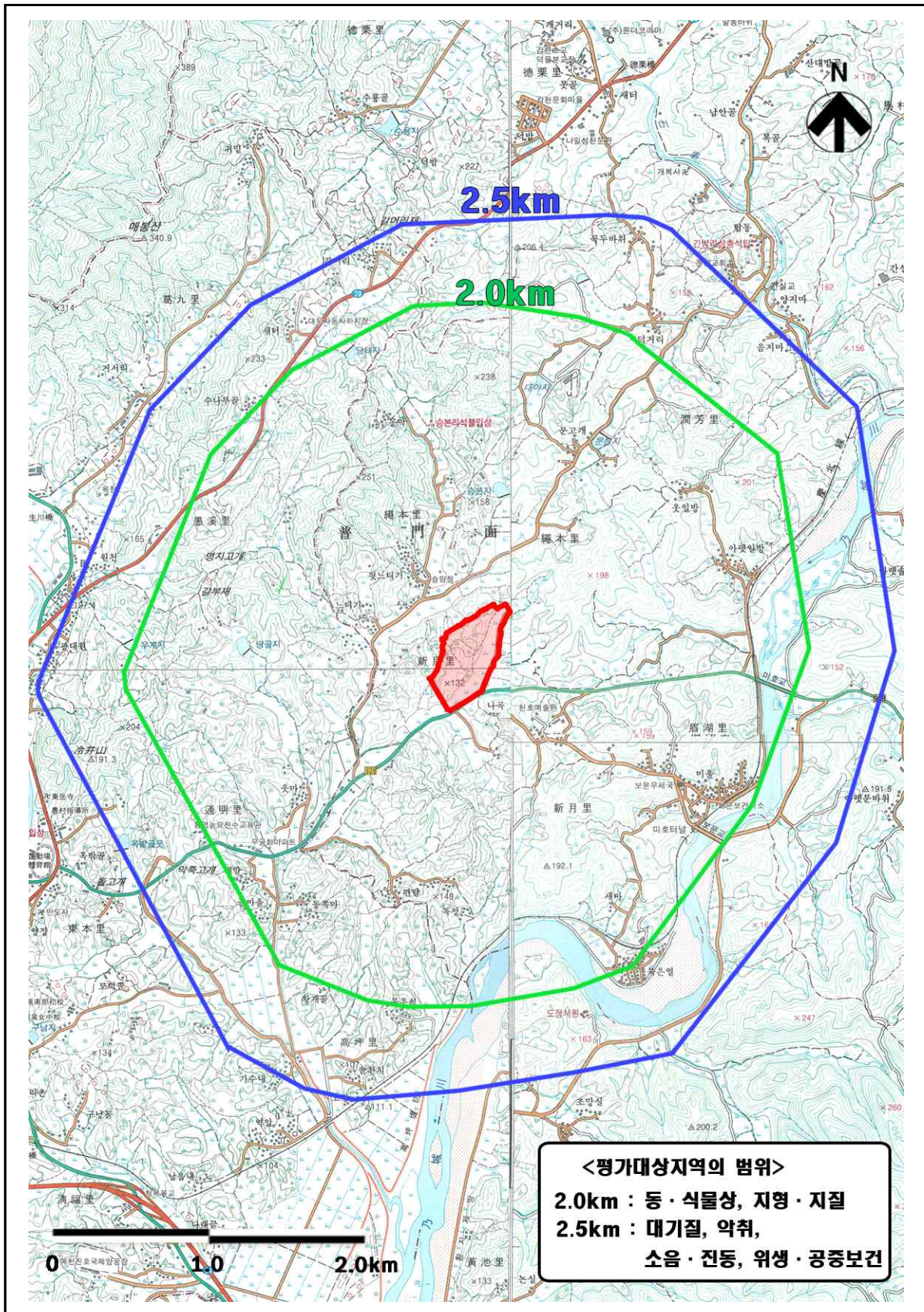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예측방법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 5 - 4> 평가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분석기법 및 관련자료

구 분		평 가 범 위	평 가 방 법
자연 생태 환경	동 · 식 물 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0km이내 및 인접 중요지역)	•식물상 및 식생, 육상 및 육수 동물상 현황 및 사업시행 후 변화검토 •동식물상 변화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자 연 환 경 자 산		•사업지구 및 예천군 관내의 자연환경 자산 현황 및 변화검토
대기 환경	기 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안동 기상대의 기상자료 분석
	대 기 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5km이내)	•공사시 및 운영시 오염물질 발생이 주 변지역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정도 파악
	악 취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5km이내)	•운영시 오염물질 발생이 주변지역 악취 에 미치는 영향정도 파악
	온 실 가 스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공사장비 및 운영시 공장가동으 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 및 적정 저감대책 수립
수 환경	수 질 (수리 · 수문)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토사유출 방지대책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 오·폐수량 및 농도를 추정하고 적정 처리대책 수립 •운영시 비점오염원에 대한 인근수계 적정 저감대책 수립 •공사시 및 운영시 우수유출량등 수리 · 수문 검토 및 저감대책 수립
토양 환경	토 지 이 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계획 및 도입시설 적정성 검토 •토지이용계획 상의 변화 제시
	토 양	•사업지구 내	•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오염유발물질 발생여부 파악 및 적정 저감대책 수립
	지 형 · 지 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0km이내 및 인접 중요지역)	•부지정지시 발생하는 절 · 성토 비탈면 검토 및 적정 처리대책 수립

<계 속>

구 분		평 가 범 위	평 가 방 법
생활 환경	친 환 경 적 자 원 순 환	•사업지구	•공사시 폐기물 및 폐유 발생량 산정 및 처리대책 수립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산정 및 처리대책 수립
	소 음 · 진 동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5km이내)	•공사시 투입장비 운영에 따른 정온시설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운영시 공장가동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 음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위 락 · 경 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주변 조망가능지역)	•주요 조망점 선정 및 각 조망점에서의 경관현황 제시 및 경관변화 예측
	위 생 공 중 보 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5km이내)	•사업지구 주변 사업현황을 파악 및 영향 예측
	일 조 장 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지구 주변 농경지 일조영향 예측
사회 경제 환경	인 구 · 주 거 · 산 업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 전·후 인구, 주거, 산업구조 변화 예측



<그림 2.1- 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3.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3.1 의견수렴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예천군 홈페이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을 이용하여 14일 이상 공람·공고할 것이다.

3.2 의견수렴 계획

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 예천군 및 정보통신망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을 이용하여 공람·공고한다.
- 예천군 정보통신망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천군청 및 보문면사무소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토록 한다.

<표 3.1- 1> 의견수렴 내용

의견수렴 근거	공람장소	방 법	대상범위	비 고
환경영향평가법	예천군청 보문면사무소	공람·공고	지역주민	

나.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협의회 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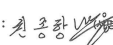
4.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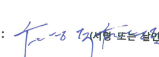
- 심의안건 :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 심의기간 : 2017년 1월 18일 ~ 2017년 2월 28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위원장 외 8인 (총 9인)

구 분	소	속	직 위
위 원 장	예 천 군 청	-	부 군 수
위 원	대 구 지 방 환 경 청	환 경 평 가 과	과 장
위 원	영 남 대 학 교	도 시 공 학 과	교 수
위 원	경 북 도 립 대 학 교	토 목 공 학 과	교 수
위 원	한 국 환 경 정 책 평 가 연 구 원	-	연구위원
위 원	녹 색 희 망 연 합 회	-	회 장
위 원	보 문 면 신 월 리	-	이 장
위 원	예 천 군 청	건 축 도 시 과	과 장
위 원	예 천 군 청	환 경 관 리 과	과 장

대구지방환경청 (1/6)	대구지방환경청 (2/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서 □ 사업개요 < 사 업 개 요 > ○ 사업명 :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68번지 일원 ○ 면 적 : 198,000㎡ ○ 사업자 / 승인기관 : 예천군 / 예천군 ○ 기 간 : 2016년 ~ 2020년 □ 총괄의견 ○ 본 사업은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68번지 일원에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공장들의 입주를 위한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 사업시행으로 양호한 자연환경과 과도한 지형훼손 및 주변 생활공간에 환경 악영향 등이 우려되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주변지역 영향, 자연생태계 및 지형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No Action과 Action (2가지 이상)을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시 대안별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의 안을 선정·제시하여야 함 ○ 대상지역 설정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함	-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내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개발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을 경우 이를 대상지역에 포함 ○ 평가대상지역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구체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저감 대책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최중안을 선정하여야 함 3. 평가 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을 적용하여야 함 - 평가항목(14개) :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일조장애(인접 농경지 영향) - 현황조사항목(5개) : 기상, 자연환경자산, 인구, 주거, 산업 - 제의항목(2개) : 해양환경, 전파장애 ○ 평가범위 - 항목별 현황조사·예측평가는 평가 대상지역의 범위를 참고하여 설정 하되,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하여야 함 -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위생·공중보건은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5km 설정하되, 토사 운반로, 공사차량 진·출입로 및 그 주변을 포함 - 수질 및 수리·수문은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km로 설정하되,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의 하천, 저수지 등을 포함
대구지방환경청 (3/6)	대구지방환경청 (4/6)
- 동·식물상과 자연환경자산은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km로 설정하되, 주변에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을 포함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은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km로 설정하되, 지형적 요소와 지반특성, 사면안정성 등을 고려 - 경관은 대상지 인근 지역 중 사업지구가 보이는 지역(근경·중경·원경), 사업부지에서 외부 경관자원이 조망되는 지역 ○ 평가방법 등 - 기상항목은 부지기상을 측정(최소 6개월(2개월 포함) 이상)하거나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인근 기상대의 관측자료와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 연관성이 충분할 경우 기상대 자료를 활용하고, 연관성이 부족할 경우 부지기상 자료를 최소 1년 이상 측정하여 이를 근거로 대기질, 악취, 위생·공중보건 예측 및 저감방안 등 강구 - 대기질, 악취, 동·식물상, 위생 및 공중보건 항목은 각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고, 그 외 항목은 최소 2~3계절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직접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선정 - 대기질 조사지점은 사업지구 인접 경온시설과 인근의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4방위의 대표지점이 포함되도록 선정 - 온실가스는 관할 지자체의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저감목표를 설정하는 등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지침(환경부, '15.12월)”을 참고하여 평가 - 수환경(수질 및 수리·수문)의 보전은 영향이 클 경우 계절변동(갈수·저수·행수·홍수기) 고려하고, 공사 시 집중강우에 따른 토사유출량을 현재의 지형·입지조건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평가 - 동·식물상 항목은 현지조사, 문헌 및 청문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하되, 문헌조사의 경우 최근 6년 이내의 조사자료(각종 동·식물상 조사 보고서, 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등 최소 4개 이상) 활용	- 자연환경자산 항목은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역 및 형상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 저감방안을 강구 - 입주입종 및 인근 대기민감시설 등을 고려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포함한 예측 및 평가 필요 - 위생·공중보건 항목은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를 포함하되, 측정가능 물질은 현황농도를 측정된 후 사업시행에 따른 배출량을 가중하여 예측치를 산정하고 저감대책을 강구 ※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환경부, 2015.05) 참고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강구 - 사업지구 주변에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 시 누적 평가를 실시 - 영향예측은 저감방안 시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 - 저감방안은 가능한 물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 하되, 그 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 선정은 가급적 현황 조사지점과 공사 및 운영 시 영향예측지점과 연계되도록 선정 - 사업 영향권 지역 내 다른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시행중인 경우에는 조사지점과 조사항목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방안 검토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공람하여야 함.

대구 지방 환경청 (5 / 6)	대구 지방 환경청 (6 / 6)												
- 공고·공람 시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공유일 제외)에서 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충분히 홍보. - 사업추진 전반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 - 추가 홍보(안) : 현수막 부착,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 마을방송 등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약식평가 대상에 해당됨 - 다만, 사업으로 인한 운영 시 환경적인 영향 검토 시 인접한 예천 제2농공단지와와 누적평가를 통해 영향을 예측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실제 농공단지지의 규모는 455,000㎡(예천 2농공단지 257,000㎡ +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198,000㎡)이므로 약식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6. 기타 의견 ○ 인접하여 조성된 예천 제2농공단지의 분양품을 조사하여 농공단지 조성 규모의 적정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 부지조성 및 산업단지 운영은 주변 주거단지 등 정온시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면밀한 영향예측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향후 사업시행과정에서 주민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당 주민들의 의사는 충분히 수렴 ○ 개발지역의 생태적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현재상태 생태면적률”과 “계획상태 면적률”을 각각 제시하여야 함 - 계획상태 면적률은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구 또는 불특별 생태면적률을 세분화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20% 이상이 되도록 제시 *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환경부, '16.7월)” 참조. ○ 각종 현황조사 자료에 대한 현황화 및 도면 등은 육안판독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현행화된 환경관련 보호지역과 사업지구와의 이격거리를 나타내고 도면 등은 육안판독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확대, 색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범례를 명시, 환경현황 측정지점을 명확히 표시 ○ 비점오염원 관리 및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저영향개발(LID)기법*을 도입·검토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환경부, 2013.7월)」참고 ○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 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우리청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저가발주로 인한 평가서 부실작성을 예방하고자 평가 용역의 저가발주 여부 등을 중점검토하고 있음 - 평가서에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을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 *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한 운영지침(환경부, '12.10월)」 참조 위와 같이 검토함 2017. 2. 1 심의위원 : 이정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영 남 대 학 교 (1 / 1)	경 북 도 립 대 학 교 (1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table border="1"> <tr> <td>사 업 명</td><td>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td></tr> <tr> <td>위 치</td><td>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 68번지 일원</td></tr> <tr> <td>규 모</td><td>198,000㎡</td></tr> </table>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적당함으로 판단됨. 2.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적정성 적당함으로 판단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적당함으로 판단됨. 5. 기타의견 - 차라리 원도면적률에 대한 평가가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차라리 원도면적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으로 판단됨. 위와 같이 검토함. 2017. 2. 13. 심의위원 : 김 의 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사 업 명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위 치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 68번지 일원	규 모	198,000㎡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table border="1"> <tr> <td>사 업 명</td><td>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td></tr> <tr> <td>위 치</td><td>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 68번지 일원</td></tr> <tr> <td>규 모</td><td>198,000㎡</td></tr> </table>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대상지역 설정은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2.0km, 대지 및 도로 폭은 2.5km를 반영 범위로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시간적 평가 범위로 급속 변화로 평가하여 적당함으로 판단됨. 2.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적정성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와 평가서 대안에서 검토된 사항 이행에 관한 약정사항 이행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보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으로 판단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평가항목 선정 및 범위는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며, 평가항목에서 동적변동 및 대기환경, 수환경 등은 평가항목 및 평가시기(계절상 등)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으로 판단됨. 5. 기타의견 본 사업은 약식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함. 위와 같이 검토함. 2017. 2. 1 심의위원 : 장 의 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사 업 명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위 치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 68번지 일원	규 모	198,000㎡
사 업 명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위 치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 68번지 일원												
규 모	198,000㎡												
사 업 명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위 치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 68번지 일원												
규 모	198,0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 총괄 의견 ○ 계획지구와 연결하여 예천 제2농공단지가 분할 중에 있으므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평가하여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정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본 계획사업과 예천 제2농공단지사업에 대한 누적적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의 영향을 검토하고 누적적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함 2.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공중 사항 - 입주업체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들 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대기질, 악취, 수질, 건강성 위해물질 등) 현황을 파악하여 평가서에 수록하여야 함 - 계획지구 주변의 대기질, 악취, 수질 등의 현황조사를 면밀히 수행하고 이들 자료를 영향 예측 시에 비교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예천 제2농단지 협의 시 환경적 영향이 제시된 사항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록하여야 함 ○ 동·식물상: 생태환경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제시될 수 있도록 종다양성이 풍부한 시점을 포함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동식물상 조사 범위는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영향 범위는 최대한 고려)과 하류 수계를 포함 ○ 대기질 및 기상 - 계절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는 현황분석(시간별 측정을 실시하여 24시간 평균을 산출, 맑은 날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 - 기상자료는 가능한 주변 지역의 305일간의 부지가상 측정자료 등을 활용 - 대기질 영향평가는 인근의 농공단지를 포함한 누적영향평가를 실시 ○ 위생·보건 - 현황조사로서 취약집단인 어린이(0-9세)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을 면밀히 조사 - 건강영향평가는 인근 농공단지를 포함한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분석	○ 소음·진동: 인근의 주거지 현황을 파악하고 주거지에 미치는 소음·진동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 ○ 지형지질: 지형지반 및 생태축 단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성 상부 및 급경사 사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시 ○ 수질 - 추가적인 농공단지 건설로 인하여 수용하천의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됨. 명확한 수질현황 파악 및 저감대책(공공하수 및 폐수종말 연계처리 등)을 수립하여야 함1 -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index), 「공정배수의 발생과 처리, 환경부(2014)」 등을 참조하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을 검토하고 이를 항목을 수질조사에 반영하여야 함 - 용수공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수리·수문 - 농지를 활용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바, 주변 농지의 농업용수 공급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시행 후에 농업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기타의견 ○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함 ○ 인근지역의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특히 대기질 등의 생활환경영향 및 공사 시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안전 등의 민원에 대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2017. 2. 10. 심의위원: 김 태 윤 												
녹색희망연합회 회장(1/1)	보문면 신월리 이장(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table border="1"> <tr> <th>사업명</th><td>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td></tr> <tr> <th>위치</th><td>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68번지 일원</td></tr> <tr> <th>규모</th><td>198,000㎡</td></tr> </table>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의 적정성 · 평가준비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상지역을 설정하면 될 것임 2.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적정성 · 의견없음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농공단지 운영시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기타의견 · 농공단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피해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 위와 같이 검토함. 2017. . . . 심의위원:  또는 남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사업명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치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68번지 일원	규모	198,000㎡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table border="1"> <tr> <th>사업명</th><td>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td></tr> <tr> <th>위치</th><td>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68번지 일원</td></tr> <tr> <th>규모</th><td>198,000㎡</td></tr> </table>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의 적정성 · 적정함 2.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적정성 · 본 사업 추진으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평가서 작성시 세부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저감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농공단지 운영시 악취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저감대책의 수립이 필요함 · 또한 식료품제조업의 경우 유기성 폐기를 발생, 수질오염이 우려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4. 기타의견 · 없음 위와 같이 검토함. 2017. . . . 심의위원:  (서명 또는 날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사업명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치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68번지 일원	규모	198,000㎡
사업명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치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68번지 일원												
규모	198,000㎡												
사업명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치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68번지 일원												
규모	198,000㎡												

예 천 군 청 건 축 도 시 과 (1 / 1)	예 천 군 청 환 경 관 리 과 (1 / 1)												
환 경 영 향 평 가 협 의 회 심 의 의 건 서 <table border="1"> <tr> <td>사 업 명</td><td>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td></tr> <tr> <td>위 치</td><td>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68번지 일원</td></tr> <tr> <td>규 모</td><td>198,000㎡</td></tr> </table>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의 적정성 ·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등 검토 지침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설정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적정성 · 적정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공사시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토양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4. 기타의견 · 평가서 작성 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탐문조사 및 기존자료를 활용해야 함 위와 같이 검토함. 2017. 2 . 3 . 심의위원 :  (서명 또는 날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사 업 명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위 치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68번지 일원	규 모	198,000㎡	환 경 영 향 평 가 협 의 회 심 의 의 건 서 <table border="1"> <tr> <td>사 업 명</td><td>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td></tr> <tr> <td>위 치</td><td>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68번지 일원</td></tr> <tr> <td>규 모</td><td>198,000㎡</td></tr> </table> 4.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의 적정성 · 대상지역의 범위 설정은 적정할것으로 보이며, 범위내에 본 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 및 주민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할 것임 2.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적정성 · 완충녹지의 구성과 저류지 및 배수지의 구성은 녹지지역이 사업지구에 원활한 녹지공간으로 조성되는가, 조성비용은 법규상 적합한가, 수변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를 검토할 것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사업시행 후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소음·진동, 토양 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요망 4. 기타의견 · 없음 위와 같이 검토함. 2017. 2 . 3 . 심의위원 :  (서명 또는 날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사 업 명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위 치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68번지 일원	규 모	198,000㎡
사 업 명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위 치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68번지 일원												
규 모	198,000㎡												
사 업 명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위 치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68번지 일원												
규 모	198,000㎡												